

동해·묵호항 예선 공동배정 규약서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묵호항 등록 예선(6척)의 공동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공동배정 규약을 통한 공동배정 적용 대상은 국가관리무역항(동해·묵호항)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관리무역항(옥계·삼척·속초 등) 입·출항 선박의 타항지원, 항내 특별작업 등 예선작업에 적용한다.

제3조(공동배정 예선사업자)

① 예선의 공동 배정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배정 참여 예선사업자와 대표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가. 명칭 : 예선 공동배정 사업자

나. 공동배정 참여 예선사업자

- | | |
|------------|-------------|
| 1) (주)세경해운 | (대표자 : 이희갑) |
| 2) (주)세경선박 | (대표자 : 이희갑) |
| 3) (주)세경 | (대표자 : 이상영) |
| 4) 해양환경공단 | (대표자 : 강용석) |
| 5) (주)강동해운 | (대표자 : 신동수) |

② 제1항의 공동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사업자 중 이를 대표하는 예선사업자는 ‘(주)세경해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대표 예선사업자는 공동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가. 예선의 공동배정

나. 예선사용자(선사, 대리점 등)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④ 제2항의 대표 예선사업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예선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임 또는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공동배정 참여 예선 현황)

공동배정에 참여하는 예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선사업자	선명	총톤수(톤)	마력
(주)세경해운	동해1	339	3,600
(주)세경선박	동해3	217	3,600
(주)세경	세경1	189	2,800
해양환경공단	316대룡	225	3,600
(주)강동해운	강동51	298	5,220
	당진	124	2,000

제5조(예선사용기준 및 예선사용료)

-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예선사용기준)에 따르며, 기타 지방관리무역항 및 특별작업 등은 예선사업자와 예선사용자 간 별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예선사용요율표에 따른다.

제6조(예선사용신청 및 방법)

- ① 예선사용자는 예선을 사용하기 12시간 전에 예선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입출항 시각 변동, 기상악화 및 기타 사정으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5시간 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 예선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배정 방법)

- ① 예선사용신청을 받은 대표 예선사업자는 본선의 입·출항에 차질이 없도록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배정한다.
- ② 예선의 공동배정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오염사고·선박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 예선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가. 2,000마력급 : 세경1 → 당진 → 세경1 → 당진
나. 3,000마력급 이상 : 동해1 → 동해3 → 316대룡 → 강동51
- ③ 예선사용자 간 예선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사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별도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출·입항 선박의 안전, 일정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은 출력 예선의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업자 간 협의하여 배정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공동배정의 기간)

본 공동배정의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동배정 참여 예선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한다.

제 9조(시행일)

위와 같이 공동배정 규약을 확인하며, 본 규약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공포하는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일부 문구 삭제 및 수정)

※ 삭제 : 제6조 ②항, 수정 : 제6조 ③항

부 칙

이 규약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대표 예선사업자 변경 및 예선 1척 추가)

※ 대표 예선사업자 '해양환경공단→(주)세경해운' 으로 변경, 해양환경공단 예선 1척(318대룡) 추가

부 칙

이 규약은 2020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예선사업자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 공동배정제 참여 예선사업자 추가(강동해운) 및 제4조 제7조 ①, ②항 수정 제9조 수정

부 칙

이 규약은 2026년 08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적용범위 추가 및 일부 문구 삭제·수정).

※ 적용범위 지방관리무역항을 포함한 타항작업 및 항만예선을 동원하는 항내 작업 추가, 제4조 공동배정 참여 예선 해양환경공단 318대룡 삭제, 강동해운 강동51호 추가 제6조 ①항, 제7조 ①, ②항 수정, ④항 추가, 제8조(공동책임) 삭제

(주)세경해운 대표이사 이 희 갑 (인)

(주)세경선박 대표이사 이 희 갑 (인)

(주)세 경 대표이사 이 상 영 (인)

해양환경공단 이 사 장 강 용 석 (인)

(주)강동해운 대표이사 신 동 수 (인)